

위급한 사건을 현장에서 신고 받았을 때

1 피해자 보호

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**즉시 분리**하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.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함께 이동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

2 가해(지목)자 신병확보

현장에서 가해(지목)자가 신고되었다면,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신병을 확보합니다. 피해자와 즉시 분리한 후 조용히 별도의 조사장소로 인도하되, 저항을 고려하여 두 명 이상이 동행합니다.

3 사건 처리

▶ 외부기관 협조 요청

강간,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,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**응급지원요청(119)**, **범죄신고(112)**, **해바라기센터(3672-0365, 성폭력 피해 의료지원 및 증거채취)** 및 **교내 인권센터(2220-1444)**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.

▶ 직접 조치 (* '사고경위 및 확인서' 양식 활용)

당장 신고할 상황이 아니라면,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건에 대한 1차조사를 해 둡니다.

- 피해자/신고인이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, 정중하게 신원(신분증)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(녹음)을 확보합니다.
- 이 때 피해자/신고인에게 사건처리에 관한 요구사항 (예: 신고대상 행위의 즉시 중지, 직접 사과, 사과문 작성, 인권센터 공식신고, 외부기관 신고 등)이 있는지를 확인하고, 있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. 가능하다면 사실 확인 후 진술서(자필, 서명)를 받습니다.
- 가해(지목)자/피신고인에게 중립적 태도로 정중하게 신원(신분증)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(녹음)을 확보합니다. 가능하다면 사실 확인 후 진술서(자필, 서명)나 사과문(자필, 서명)을 받습니다.

※ 초기조치가 완료된 후, 필요시 **인권센터 홈페이지(hrc.hanyang.ac.kr)**를 통해 신고 및 지원요청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

4 귀가 조치

외부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, 위 조치들이 완료된 후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인/보호자와 동반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교 내 지원	
기본연락처	인권센터 (02-2220-1444)
	학생처 학생지원팀 (02-2220-0085)
야간문제 발생시	통합보안상황실 (02-2220-2117~9)
응급조치 필요시	한양보건센터 (02-2220-1466)
상담지원 필요시	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(02-2220-1498)

교 외 지원	
경찰신고	112
응급상황	119
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(서울대병원 내)	02-3672-0365 (24시간, 성폭력 의료지원/증거채취)
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(송파구 경찰병원 내)	02-3400-1700 (24시간, 성폭력 의료지원/증거채취)



예방 유의사항

- 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, 문구, 이미지, 발언,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즉시 정중하게 제재합니다.
- ②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게임이나 벌칙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.
상대방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는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③ 내가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, 억압, 폭력, 차별일 수 있습니다.
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자의적 판단이나 편견 없이 경청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.
- ④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인지하면 누구든 즉시 해당 언행이나 상황을 중단시킨 후 책임자(학생대표, 당직 교직원 등)에게 알립니다.
언제나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단의 비상연락망이 사전에 공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⑤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에서도 선후배 관계, 분위기가 어색해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개인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, 상황 발생 시 방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⑥ 불편하고 불쾌함을 느끼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때 나에게도 가장 즐거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.

대응 유의사항

- ① 신고 내용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.
- ②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종용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.
예) “두 사람 애인 사이 아니에요?” “이 학생분도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” 등
- ③ 신체접촉으로 위로하는 것을 삼갑니다.
불가피하게 피해자를 부축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쓰다듬는 등의 접촉을 삼갑니다.
- ④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먼저 동의를 구합니다.
만약 피해자가 충격으로 이야기를 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원 정도만 확인 후 지나치게 질문을 강요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⑤ 서둘러 사건을 종료하려 하거나 화해/용서 권유 등 무마하려는 시도는 **2차가해**가 될 수 있습니다.
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호소 내용을 자의적 판단이나 편견 없이 경청하고, 피해자가 동요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- 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합니다.
더불어 사건의 조치는 **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원칙**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고지합니다.
- ⑦ 가해(지목)자가
당황한 마음에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주변에 과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려 할 경우 **2차가해**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, 공정한 사건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중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당부합니다.
- ⑧ 사건의 참고인이나 목격자가 있다면
제3자의 언행으로 인한 피해자 신분 노출이나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등 **2차 피해**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및 비밀유지를 당부합니다.
- ⑨ 내가 사건의 목격자라면
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최대한 진실한 태도로 조사 등에 협조하고, 피해자 신분 노출이나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등 **2차 피해**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.

